



제433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거절 금지〉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34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6. 1. 14.
3.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함)되었다는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또는 처리 동의를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철회에 따른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동의 철회에 따른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⑦ -----제6항까지----- -----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2. (생략) 23. 제37조제3항 또는 <u>제5항</u>(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4. ~ 27.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2. (생략) 10.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u>제37조제4항</u>(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12. (생략) ⑤ (생략)	----- ----- -----.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2. (현행과 같음) 23. -----<u>제6항</u>----- ----- ----- ----- 24. ~ 2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9의2. (현행과 같음) 10. ----- -----<u>제37조제5항</u>----- ----- ----- ----- 11.·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 제37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¹⁾.

-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처리자가 유료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조건으로 정하여 회원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등²⁾ 유출 관련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³⁾,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또는 처리 동의를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철회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개인정보위, 쿠팡측에 ‘회원탈퇴 절차 개선,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2025. 12. 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296>)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하는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회원탈퇴절차를 까다롭게 정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현행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또는 동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⁴⁾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른 처리 정지 또는 동의 철회 거절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바, 이러한 예외까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이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할 경우, 타 법령상 기록보존 의무와의 충돌⁵⁾이 발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예컨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및 대금 결제 내역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철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생활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현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⁶⁾, 개인정보 유출등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할 경우 사고 이후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원인 분석, 침입경로 추적, 피해범위 산정 등을 위하여는 접속기록·처리이력 등 자료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 철회에 따른 지체없는 자료 파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고 수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

□ 참고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법상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에 따른 파기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절 사유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출 등이 된 이후의 처리정지 및 파기조치는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는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08